

KERI Insight

개인 기부행위 고찰 및 정책시사성 - 2013년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heonjaes@uos.ac.kr)

2013년 8월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12월 말에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제개편으로 2014년부터는 소득세법의 특별공제항목에 대한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 특별공제항목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정부에서 세액공제 전환의 취지로 설명한 조세지원의 형평성 제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두 번째 취지인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 감면을 막고 이를 통해 세수를 추가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최소한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기부금공제혜택의 축소로 세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민간기부금의 축소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세금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걸쳐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효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소 비약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기부금공제혜택의 축소가 정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이 글에서는 송헌재(2013)의 연구를 일부 확장하여 기부분야별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에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 기부가격탄력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기부분야별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할 결

과에 따르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종교단체 이외의 분야에 기부할 때의 가격탄력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기부분야에 따른 기부금공제혜택의 차별적 적용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종교기부금이 다른 사람의 복지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지출이라기보다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사적인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공제율을 다른 분야의 기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서도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이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도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였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치재의 성격을 지닌 기부금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무래도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에 대하여 공제율을 높여주기보다는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글이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거나 이번에 시행된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이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려고 쓴 글은 아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에서 거의 유래가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만큼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변화가 가져오게 될 변화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고

치열하게 분석하고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필자는 특별공제항목에 포함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데 공감한다. 소득창출능력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고 길게 볼 때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시장경제가 더욱 활기차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보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경제를 더욱 건강하고 살찌우는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에서 이를 장려하는 것이 사회에서 필요한 곳으로 도움의 손길이 미치

는데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세금징수에 따르는 비용을 낮추어 경제 전반의 활기를 띄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권고해본다.

이제 2014년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실제로 특별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평가과정을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이다. 평가는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만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서둘러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는 연구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올 한해는 연구자들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보내는 시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제1장. 들어가며

가끔씩 TV에서 굶주리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도와달라는 캠페인 광고를 볼 기회가 있다. 누군가가 이 광고를 보고 나서 기꺼이 그들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면 그들이 납부한 기부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며 이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경제학에서 효용이라고 불리는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부는 기본적으로 남을 돕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미덕으로 여겨지고 또한 어느 정도 민간에서 정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민간의 기부활동을 장려하고자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즉,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세금을 일부 깎아줌으로써 기부를 장려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까지 법에서 정

한 범위 내에서 개인이 납부한 기부금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경감시켜주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부금 소득공제가 2014년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01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항목 중 자녀관련 공제와 특별공제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를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율을 15%로 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기부금공제의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정되었다. 이러한 소득세제 개편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소득세법의 근간을 한꺼번에 뒤흔드는 커다란 변화이다. 따라서 상당한 변화와 파장이 예상된다. 과연 어떤 변화를 떠올릴 수 있을까? 먼저 기부금공제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변화부터 한 번 살펴 보도록 하자.

제2장. 기부금공제의 실질적 의미

기존의 기부금 소득공제방식과 올해 소득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기부금 소득공제가 적용될 경우 세금혜택과 이것이 기부금 납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자. 당신이 연봉이 아주 높아서 근로 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다 제하고 나서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여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어서 작년에 1,000만 원을 여러 기부단체에 기부하였으며 이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35% 한계세율구간에 속하는 당신이 납부할 세금은 2,010만 원이다. 그러나 만일 기부금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당신의 과세표준은 1억 1,000만 원이 되었을 테고 따라서 세금은 2,360만 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 소득공제 때문에 당신은 35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였다. 그렇다면 이만큼 절약된 세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당신이 기부한 1,000만 원의 기부금 중에서 350만 원을 정부가 당신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기부한 단체는 여전히 1,000만 원의 기부금 수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당신이 기부단체에 기부한 1,000만 원 중에 정부가 350만 원을 대신 납부해준 것이 된다. 즉, 정부가 당신으로부터 350만 원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고 대신 기부단체에 당신의 이름으로 이 금액만큼 기부를 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노동시장에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을 만큼 운이 좋지 못해서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당신은 누구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돕는 일에서 삶의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어서 연봉에 상관없이 1년에 1,000만 원씩은 기부를 하는 사람이다. 이제 당신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1,002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 되고 세금은 1,152만 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기부금 소득공제 덕분에 15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였다. 따라서 앞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당신이 기부한 1,000만 원 중에 정부가 150만 원을 당신의 이름으로 대신 납부해준 것이 된다.

위에서 든 두 가지 예는 기부금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을 때 납세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실제로 기부자 본인과 정부가 각각 얼마만큼 부담을 나누어 기부하는지 설명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실제로 기부단체에 기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신의 한계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는 과세소득이 많아서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이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15%의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앞서 든 예를 그대로 적용하면(당신이 다른 소득공제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면) 당신의 연봉이 매우 높았을 때 과세표준은 1억 1,000만 원이어서 소득세는 2,210만 원(=2,360만 원-1,000만 원×15%)이 되고, 당신의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을 때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 되어 소득세는 1,002만 원(=1,152만 원-1,000만 원×15%)이 된다. 두 경우 모두 당신에게 적용되는 세금절약분은 150만 원이고, 따라서 당신의 연봉수준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부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전체기부금의 15%의 일정한 비율로 유지된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기부금지출에 대하여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1원을 기부하는 데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가격)이 (1-한계세율)원이 되지만 기부금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소득수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15%)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15%를 넘는 기존의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가격은 그만큼 늘어나고 한계세율이 6%인 저소득 기부자들의 경우 기부가격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기부가격이 변하는 만큼 기부자들의 행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예측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리고 그 변화

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부금공제방식의 변화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변경된 세액공제방식으로 고소득 기부자들은 기부가격이 증가한 만큼 기부를 줄이고 싶어 할 것이고 반대로 저소득 기부자들은 기부를 더하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전체 기부금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서로 상반되는 두 효과의 크기에 의존한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기부자들에게 보조하는 금액 또한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세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의 역할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의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3장.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의 타당성 검토

과연 정부는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이 어떤 과장을 가져올지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일 먼저 정책변경에 앞서 새로운 정책의 타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게 될 세수의 변화 또한 여러 방법으로 예측해보았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취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취지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정부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앞서 든 기부금의 예를 다른 특별공제에 적용해서 그 타당성을 살펴보자.

당신의 연봉이 높아서 과세표준이 1억 원인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다행히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앞으로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기부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다른 특별공제도 전혀 받지 않았으며 1,000만 원의 치료비는 전액 의료비공제를 받았다고 하자. 앞서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의료비공제혜택으로 소득세를 350

만 원 절감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는 당신의 치료비 중에서 350만 원은 정부에서 병원에 대신 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당신의 연봉이 그리 높지 않아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데 비슷한 교통사고를 겪고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되었다고 해보자. 이때 당신은 1,000만 원의 치료비 중에서 15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받아 병원에 납부한 셈이 된다. 의료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이제 당신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받는 의료비 보조의 비율은 15%로 일정해진다. 이 상황을 정부에서 발표한 조세지원의 형평성 개념에 적용해서 살펴보자. 의료비의 경우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닌다.

의료비공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소득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득창출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더 높은 의료비 보조를 해주는 셈이 된다. 소득창출능력에 따라 정부의 의료비 보조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창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료비 보조비율을 높여서 이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노동시장에서 소득창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질지 모른다. 따라서 의료비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조세지원의 형평성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교육비공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소득공제는 인적자본이 더 높아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인적자본을 추가하고자 자신 또는 자녀들에게 지불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인적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교육비공제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 현

상을 강화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비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는 세액공제 전환에 대하여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감면을 막고 이를 통해 세수를 추가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도 함께 발표하였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높았던 기존의 고소득자들이 받던 세금경감혜택이 축소되면서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 또한 당연히 예측된다.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최고소득자들의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기존에 정부에서 보조하던 비율이 38%에서 15%로 줄어드는 만큼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하고 그만큼 세수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부보조비율의 변화는 납세자들이 실질 의료비용이나 교육비용에 영향을 미쳐 의료수요와 교육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는 생활하면서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그리 높지 않은 필수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교육비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이므로 자녀의 능력과 자질(quality)에 대한 부모의 선호가 크게 변할 만큼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전반적인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와 반면 기부금 지출의 경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기부금은 납세자의 소득창출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물론 기부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명성이 높아져서 소득활동을 하는데 간접적인 유리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조세지원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민태욱(2010)의 해석에 따르면 기부금에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이유가 의료비나 교육비에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와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기부금은 처음에 들었던 예처럼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 대상과 기부금을 선택하여 납부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선택이 공공재의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즉 정책적인 목적에서 기부금공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들이 기부하는 대부분의 기부 대상은 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활동 등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적인 가치를 공급하는 것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시장 기구를 통해서서는 적정한 공급을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부활동이 내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으므로 선뜻 나서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이 내가 기부하지 않아도 남들이 기부를 하면 된다는 생각에 남들에게 미루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이 사회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급자인 복지단체 등에 직접 지원을 하거나 혹은 민간 기부자들의 기부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세법이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기부를 장려하여 공익단체를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지원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먼저 국가가 복지단체 등에 직접 보조하는 방식과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적용하는 간접적인 보조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이 기부금에 세금납부에 대한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부금공제는 국가의 직접 지원과 비교할 때 다원화의 장점이 있다. 즉, 국가가 직접 복지단체 등에 지원할 경우 정치적 다수자의 선호를 기준하여 지원 대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부금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은 개별 납세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지원 단체를 선정하므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선호가 무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적 소수자가 보호되어 사회·문화의 다원화를 촉진하게 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민간 종교 및 사회단체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지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가진다.

현대사회가 이전보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면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개인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 더욱 우월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 지원방식의 강화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이어져 개인의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자유가 그만큼 박탈되고 근로유인이 저해되므로 규모의 경제 이점을 상쇄하고 남은 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이 더욱 지지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지에서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새로운 세액공제방식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기부금공제의 변화로 발생하는 세수 증가액과 기부금 감소액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소위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라고 한다. 만일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부금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기부수요의 축소규모보다 기부가격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복지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반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기부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보다 기부수요 감소효과가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이 가져오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기부 가격탄력성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커서 기부금 감소의 효과가 소득세수 증가의 효과를 크게 상회할 정도로 발생한다면 기존에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사회에 제공되던 공공재를 정부에서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여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민간이 담당하던 분야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복지재원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부금공제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감면을 막고 이를 통해 세수를 추가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금 관련 세제 개편의 경우에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4장. 기부금의 가격탄력성

여기서는 새로운 논의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여 보도록 하겠다. 정부가 개인의 기부금에 소득공제형식의 세금혜택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개인의 기부를 g 라고 하고, 해당 기부자의 한계세율이 t 라면 기부자들이 기부 한 단위를 추가하는데 지불하는 가격(p)은 $(1-t)$ 가 되고, 정부의 세수손실은 tg 가 된다. 개인의 기부를 g 만큼 늘리기 위하여 정부의 수입이 tg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개인의 기부와 정부의 손실(정부는 복지 등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 tg 만큼의 손실을 본다)을 합한 순기부액은 식 (1)과 같다.

$$(1) \quad g - tg = (1-t)g = pg$$

정부의 조세정책의 변화는 기부가격을 변화시켜 순기부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부가격인 p 로 식 (1)을 미분하면 아래 식을 얻는다.

$$(2) \quad \frac{\partial(pg)}{\partial p} = g + p \frac{\partial g}{\partial p}$$

만일 식 (2)의 값이 0보다 작다면 기부가격이 인상될 경우 순기부액이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위 식 (2)의 우변이 0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이를 적절하게 재정리하면 아래 식 (3)을 얻는다.

$$(3) \quad g + p \frac{\partial g}{\partial p} < 0 \Leftrightarrow \epsilon = - \frac{\partial g}{\partial p} \times \frac{p}{g} > 1$$

식 (3)에서 우변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탄력성이 된다. 즉, 기부가격이 1% 변화하였을 때 기부금이 몇 %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라고 정의한다. 식 (3)에서와 같이 기부금의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기부가격의 인상으로 순기부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기부금이 가격 탄력적이라면 기부가격을 하락시켰을 때

순기부액이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부금의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정부가 기부금에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제5장.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결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부금 가격탄력성의 크기가 가져오는 함의가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가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연구 시기와 방법 및 이용한 자료에 따라 0.04 정도로 탄력성이 작게 추정된 연구도 있고 1.42로 1보다 큰 탄력성을 추정한 연구도 존재한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1 내외 또는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탄력성을 추정한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기부가격의 탄력성을 추정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박기백(2010)과 필자가 최근에 수행했던 연구(송헌재, 2013) 외에는 없다. 박기백(2010)은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현행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이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반면 기부금의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필자는 거의 9에 가까운 탄력성을 추정하여 납세자들의 기부행위가 기부금의 가격에 매우 크게 탄력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렇듯 소수의 연구에서 매우 극단적인 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우리나라의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의 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제6장. 기부분야와 기부금 가격탄력성의 관계

이렇게 기부금 가격탄력성이 크게 추정된 이유가 기부분야에 따른 싹림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기부분야에 상관없이 주무관청

에 등록된 종교단체 및 정부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통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과연 종교단체에 기부한 현금 또는 보시를 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과 같은 성격의 기부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람들 간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현금은 종교기관 운영 및 신도들을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종의 “membership fee”라고 주장하여 기부금공제대상에서 제외하던지 공제율 등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다른 기부금과 달리 공제율 한도를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종교기부금의 경우 타인을 위한 동기보다 자신을 위한 동기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면 종교단체기부금이 세금공제혜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게 추정된 이유가 종교기부금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전체 기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과 그 외 단체를 위한 기부금을 나누어서 송헌재(2013)의 자료와 추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보았다. 만일 종교기관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추정된다면 민간의 기부금이 공공재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이 다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축소방침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아래 <표 1>은 기부분야를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이외의 기관으로 나누어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ln(\text{기부금 가격})$ 이라고 표시된 설명변수의 추정계수(굵은 숫자로 표시된)의 절대값이 바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 추정치가 된다. 이 표를 살펴보면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가격탄력성의 크기(9.8)가 종교단체 이외의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의 크기(6.9)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추정결과는 바로 앞에서 예측한 대로 종교기관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기관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아무래도

1)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자료와 방법론 및 추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송헌재(2013)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타적인 동기보다 개인적인 동기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정치를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기부분야에 따른 기부금지출에 대한 Random Effect Tobit 추정결과

설명변수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
ln(가구소득)	1.258*** (0.337)	1.958*** (0.272)
ln(기부금 가격)	-9.764*** (2.291)	-6.926*** (1.778)
연령	0.145*** (0.0211)	0.0373** (0.0152)
교육연수	0.276*** (0.0695)	0.342*** (0.0523)
여성	1.712*** (0.399)	0.430 (0.284)
기혼	0.266 (0.486)	0.501 (0.374)
가구원수	-0.298 (0.867)	0.621 (0.683)
수도권 거주	-0.651** (0.306)	0.0964 (0.235)
자가	-0.199 (0.145)	-0.392*** (0.108)
ln(가구 순자산)	-1.187*** (0.358)	-1.137*** (0.256)
근로자수	2.122	2.122
표본수	5,985	5981
Log-likelihood	-8207.29	-7739.60

주: 1) *** p(0.01, ** p(0.05, * p(0.1
 2) 추정식에는 상수항과 연도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으나 보고에는 생략하였음.
 3) 송헌재(2013)에서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제출여부에 따른 선택편의를 고려하여 추정식에 inverse mills ratio의 추정치를 포함하였으나 보고에는 생략하였음.

위와 같은 추정결과는 세액공제로 전환된 기부금공제의 영향이 아무래도 종교기관에 미치는 과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결과를 놓고 보면 사회전체의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보기 어려운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삭감하는 정책방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종교단체 이외의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도 7에 가까울 만큼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기관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면서 다른 분야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분야에 따라 현재의 기부금공제 제도와 같이 한도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제혜택 크기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도록 기부금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자료를 살펴보면 기부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들은 전체 기부금의 약 54%는 종교기관에 기부하고 나머지 46%는 정당,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하였다. 따라서 종교기부금과 종교단체 이외의 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구별하여 공제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결과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정책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앞으로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하여 종교기관의 현금과 보시가 상당히 줄어든다면 종교인들의 소득도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와 함께 추진 중인 종교인들의 근로장려세제 자격부여방침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영세한 규모의 종교기관들의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기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둔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7장. 소득수준과 기부금 가격탄력성의 관계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3년 12월 31일에 2014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3,0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25%로 높여주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아무래도 고액기부를 할 수 있는 고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낮추어서 세액공제변경으로 인한 기부저해요인을 다소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를까? 만일 고소득자들이 기부가격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면 정부의 고액기부 우대의 취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서는 송헌재(2013)의 기부금과 소득 및 가구 자산 등의 자료가 2010년 물가를 기준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2010년의 가구 평균소득인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추정에 적용된 종속변수는 송헌재(2013)의 추정모형 (3)의 Max(기부금공제, 기부금)변수이다.

<표 2>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기부금지출에 대한 Random Effect Tobit 추정결과

설명변수	가구소득 ≤ 4,000만 원	가구소득 > 4,000만 원
ln(가구소득)	1.844*** (0.348)	0.855*** (0.175)
ln(기부금 가격)	-13.62*** (2.926)	-5.876*** (0.777)
연령	0.0499*** (0.0185)	0.0745*** (0.0100)
교육연수	0.321*** (0.0675)	0.182*** (0.0296)
여성	0.561 (0.350)	-0.00743 (0.187)
기혼	0.154 (0.383)	0.327 (0.203)
가구원수	-0.156 (0.129)	-0.0944 (0.0586)
수도권 거주	-0.217 (0.338)	-0.572*** (0.160)
자가	-0.319 (0.277)	-0.0777 (0.114)
ln(가구 순자산)	0.114 (1.170)	0.122 (0.286)
근로자수	2,122	2,122
표본수	5,985	5,981
Log-likelihood	-8207.29	-7739.60

주: 1) *** p(0.01), ** p(0.05), * p(0.1)
 2) 종속변수는 송헌재(2013)의 추정모델 (3)에 적용된 Max(기부금공제, 기부금지출임).
 3) 추정식에는 상수항과 연도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으나 보고에는 생략하였음.
 4) 송헌재(2013)에서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제출여부에 따른 선택편의를 고려하여 추정식에 inverse mills ratio의 추정치를 포함하였으나 보고에는 생략하였음.

위의 <표 2>는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기부금의 가격탄력성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탄력성이 4,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가구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기부가격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의미이다. 기부는 기본적으로 남을 돕는 자선행위이며 필수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여유가 없을수록 가격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있다. 즉, 개별 가구 및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부는 일종의 사치재이다. 자신의 소비를 일정부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지출하는 것인 만큼 소득이 낮을수록 기부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고소득기부의 경우에 기부가격을

낮추어주는 정책은 전반적인 기부활성화와 반대방향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의 발표자료²⁾에 따르면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 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공제 인원 442만 8,337명 중 0.04%인 1,814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공제받은 기부금 공제금액 총액도 1,080억 원에 머물러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기부금액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자들의 고액기부 유인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이 효과를 완화하고자 3,000만 원 이상의 기부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확대하였으나 위와 같은 추정결과는 전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소득 기부자들의 소액기부에 세금혜택을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개편으로 기부가격이 하락하는 한계세율이 6%인 근로자들의 기부금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일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한계세율이 15% 근로자들의 경우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8장.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기부금과 세수의 변화 예측

필자가 송헌재(2013)에서 전체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탄력성 결과를 바탕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결과 기부금과 세수의 변화를 단순한 방법으로 예측하여 본 결과 기부금공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보다 민간기부 축소효과의 크기가 훨씬 더 클 것이 예상되었다. 단순한 방법으로 예측하였다는 것은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전후에 다른 변화는 전혀 없고 기존의 기부금 수요가 가격변화에만 반응하였으며 한계세율별로 기부가격의 탄력성의 차이가 없이 모든 한계세율구간에서 탄력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는 의미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기부금공제신고

2) 출처: 제320회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승기,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 2013. 11.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자의 전체기부금 규모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단순 추계결과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이 12,571억 원 줄어들어 2011년 대비 약 12.5%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이로 인한 세수의 증가는 730억 원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11,841억 원의 순기부액 감소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필자의 추정결과를 적용하면 세수증가는 730억 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기부 감소효과는 1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물론 이러한 추정결과는 자료 및 분석방법의 한계가 포함된 결과이므로 이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일 이유는 없으나 기부금공제 개편이 가져올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표 3>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기부금과 세수 변화 예측

(단위: 천 명, 억 원)

과세표준	기부금 공제인원	기부금 공제금액	한계 세율	소득공제 기부가격	세액공제 기부가격	기부증감	세수증감
1.2천 만 이하	1,419	10,295	6%	94%	85%	8,871	-927
4.6천 만 이하	2,278	27,161	15%	85%	85%	0	0
8.8천 만 이하	458	9,121	24%	76%	85%	-9,721	821
3억 이하	88	3,071	35%	65%	85%	-8,504	614
3억 초과	7	963	38%	62%	85%	-3,216	222
합계	4,250	50,611	-	-	-	-12,571	730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신고현황 VI(과세표준 규모, 기부금) (8/14)」, 2012.
2) 송헌재(2013)의 <표 4> 재인용.

제9장. 맺음말

2013년 8월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12월 말에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제개편으로 2014년부터는 소득세법의 특별공제항목에 대한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 특별공제항목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정부에서 세액공제 전환의 취지로 설명한 조세지원의 형평성 제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두 번째 취지인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감면을 막고 이를 통해 세수를 추가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최소한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기부금공제혜택의 축소로 세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민간기부금의 축소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세금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걸쳐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효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소 비약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기부금공제혜택의 축소가 정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이 글에서는 송헌재(2013)의 연구를 일부 확장하여 기부분야별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에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 기부가격탄력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기부분야별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종교단체 이외의 분야에 기부할 때의 가격탄력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기부분야에 따른 기부금공제혜택의 차별적 적용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종교기부금이 다른 사람의 복지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지출이라기보다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사적인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공제율을 다른 분야의 기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서도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이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도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였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치재의 성격을 지닌 기부금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무래도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에 대하여 공제율을 높여주기보다는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들에게

3) 다만 이 과정에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과세표준별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규모를 알 수 있다면 25% 공제율의 효과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국세통계연보에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글이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거나 이번에 시행된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이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려고 쓴 글은 아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에서 거의 유래가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만큼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변화가 가져오게 될 변화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고 치열하게 분석하고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필자는 특별공제항목에 포함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데 공감한다. 소득창출능력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키고 길게 볼 때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시장경제가 더욱 활기차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보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경제를 더욱 건강하고 살찌우는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에서 이를 장려하는 것이 사회에서 필요한 곳으로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데 더욱 효과적인 뿐만 아니라 세금징수에 따르는 비용을 낮추어 경제 전반의 활기를 띄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권고해본다.

이제 2014년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실제로 특별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평가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가는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만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서둘러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는 연구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올 한해는 연구자들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보내는 시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 문헌>

〈국문자료〉

민태욱,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조세법 연구』, 제14권 제3호, 2008, pp. 58-95.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0, pp. 143-158.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연구』, 제6권 제4호, 2013, pp. 151-178.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4년 4월 10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72 | 팩스 785-0270~3

